



학부모 권리 장전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를 위한

코네티컷주 교육부

[P.A.23-150 제17장](#)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는 일반 법령 제164장에 따라 이중 언어 교육 제공 시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언어 학습자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서면 권리 장전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 권리 장전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요 언어로 공유해야 합니다.

즉, P.A. 23-150 제17장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가 여러 언어를 배우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명확한 권리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록은 일반 법령 제164장에 설명된 대로 이중 언어 교육을 받을 때 이러한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해당 권리 목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학년도 및 그 이후의 각 학년도에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각 지역 및 지방 교육위원회는 다음을 실시해야 합니다:

1.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의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그들이 주요 사용하는 언어로 된 다언어 학습자 권리 장전 사본을 제공하고,
2. 해당 교육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언어 학습자 권리 장전 사본을 게시합니다.

즉, 2024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모든 지역 및 지방 교육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된 다언어 학습자 권리 장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본 다언어 학습자 권리 장전을 해당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권리 장전 선언문입니다

1.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이 해당 학생의 이민 신분이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 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즉, 영어 학습자 또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가 이민자인 경우에도 주 내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2.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회보장번호, 비자 서류 또는 시민권 증명을 포함하는(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이민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학생을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어를 배우거나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사회보장번호, 비자 서류 또는 시민권 증명과 같은 이민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영어 학습자/다국어 학습자 학생이 교사 및 행정관과의 중요한 상호 작용을 하는 동안, (A) 직접 참석할 수 있는 통역사나 전화 또는 온라인 기술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통역사를 통한 번역 서비스 또는 (B)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타 전자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중요한 상호 작용은 학부모 교사 간 회의,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관리자와의 회의, 본 법규 제18조에 따라 적절하게 공지된 교육위원회의 정기 회의 또는 특별 회의, 또는 해당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들과의 예정된 회의가 포함됨 (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즉,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통역사를 통해 직접 받을 수 있거나, 전화를 통해 또는 컴퓨터를 통한 통역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 교사 간 회의나 학교 행정관과의 회의 등 교사 및 학교 리더와의 중요한 대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이는 본 법규의 제18조, 특정 법률 조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2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를 위한 학부모 권리 장전

4.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이 일반 법령의 제10-17f항의 규정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가 우세한 것으로 분류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제공하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는 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법령 제10-17f항의 규정을 기반으로 적용됩니다.

5.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학생이 현지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영어 및 해당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주언어로 작성된 서면 통지를 통해 통보 받을 권리.

즉, 영어를 배우거나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영어 및 자신이 가장 잘하는 언어로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된 언어로 현지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로부터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의 목표 및 요구 사항,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을 위한 학교의 주 표준, 시험 및 학교에서 기대하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양질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권리.

즉, 영어 학습자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언어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며 영어를 배우거나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주 표준, 시험, 학교에서 기대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이중 언어 교육 및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규칙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7.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영어 발달 및 습득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즉, 영어를 배우거나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최신 소식과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 직원과 만나 해당 학생의 영어 발달 및 습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어를 배우거나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이 영어를 얼마나 잘 배우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학교 직원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9. 현지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경우,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이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는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이 학생의 모든 학년 수준의 학교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맞는 모든 학교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11.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가 학생의 모든 학년 수준의 핵심 과목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해당 학년 수준의 모든 중요한 과목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12.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이 매년 언어 능력 시험을 받을 권리.

즉, 영어 학습자 또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매년 언어 능력 시험을 통해 자신의 언어 실력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를 위한 학부모 권리 장전

13.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군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개입 계획에 부합하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는 학교 또는 학군이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획에 부합하는 추가 도움(개입을 통한)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4.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이 일반 법령 제10-17e항에 정의된 대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유지되는 동안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매년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어 학습자 또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일반 법령 제10-17e항에 설명된 대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유지되는 한 매년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15. 영어 학습자/다언어 학습자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다언어 학습자 서비스 또는 편의를 받을 권리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에 연락할 권리 (교육위원회가 해당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보장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책에 관한 정보 포함).

즉, 영어 학습자 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언어 학습을 위한 서비스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나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포함됩니다.